

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(안)

의안 번호	86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.
제 출 자 : 중 구 청 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(안)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운용하고자 함.

2. 제안근거

-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
- 울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
-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6조

3. 주요골자

- 운용방침
 -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
 -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강화

○ 기금현황

설치년도	설치목적	설치근거	비고
2000. 7.13	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시 필요한 재원 충당	식품위생법 제89조, 울산광역시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	

○ 기금운용계획

(단위 : 천원)

수 입 계 획							지 출 계 획				
계	출연금	보조금	융자금 회수 (이자포함)	예치금 회수	이자 수입	기타 수입	계	고유목적 사업비	융자금	예치금	기타 지출
201,002				159,802	1,200	40,000	201,002	8,250		176,752	16,000

○ 기금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2011도 말 현재액 ①	2012도 기금운용계획		2012년도 말 현재액 ④=①+②-③	증 감 ④-①
	수입 ②	지출 ③		
159,802	41,200	24,250	176,752	16,950

4. 내 용

- 별 첨 【201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(안)】

의안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866)

1. 의안명 :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

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1. 11. 11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 : 2011. 11. 16(수)
- 라. 위원회 심사 : 2011. 12. 6(화)

3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생활지원국장)

- 가. 식품위생법 제89조,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에 의거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(안)을 별첨과 같이 수립·운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수입 (단위 : 천원)

예 산 액	예치금	적립금이자	기타(과징금)
201,002	159,802	1,200	40,000

○ 지 출 (단위 : 천원)

예 산 액	예치금	사업비	기타지출
201,002	176,752	8,250	16,000

4. 근거법규

- 식품위생법 제89조, 울산광역시중구식품진흥기금운용·관리조례

5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호)

- 식품진흥기금은 수입과 지출이 각각 전년도에 비해 25,000천원 증액된 201,002천원으로 편성하였음.
- 식품진흥기금 주된 수입원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수입으로써 매년도와 같은 수준인 40,000천원을 계상하였는데, 과징금 부과대상과 부과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.
- 책자 38쪽, 수입계획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,200천원으로써 2011년도에 비하여 세입이 증액됨에도 불구하고 적립금 이자가 2,602천원이 감소한데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